|  |  |  |
| --- | --- | --- |
| **전기기계제품 국제입찰기구 자격**  **관리방법**  상무부 령 2012년 제3호  《전기기계제품 국제입찰기구 자격 관리방법》이 2012년 3월 9일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의 2012년 제61차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전기기계제품 국제입찰기구 자격 심사확정방법》(商務部令 [2005] 제6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부장 陳德銘  2012년 4월 8일  **제1장 총 칙**  **제1조** 전기기계제품의 국제입찰 시장 질서를 규율하고 전기기계제품 국제입찰기구의 자격관리를 보강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실시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 그리고 유관부서의 입찰활동에 대한 국무원의 행정감독 직책분담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전기기계제품의 국제입찰(이하 국제입찰이라 함) 대리 업무에 종사하는 기구의 자격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지칭하는 전기기계제품 국제입찰기구(이하 국제입찰기구라 함)라 함은 전기기계제품 국제입찰자격(이하 국제입찰자격이라 함)을 취득하고 국제입찰 대리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제4조** 상무부는 전국 국제입찰기구의 자격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신강생산건설병단, 연해 개방도시의 전기기계제품 수출입관리기구 및 국무원 유관부서 전기기계제품 수출입관리기구(이하 지방, 부서 전기기계판공실이라 함)는 본 지역, 본 부서의 국제입찰기구 자격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2장 자격 신청과 심사확정**  **제5조** 국제입찰기구 자격등급은 갑, 을 및 예비 을급으로 구분한다.  갑급 국제입찰기구는 국제입찰업무에 종사함에 있어서 위탁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을급 국제입찰기구는 1회 위탁금액이 4,000만 달러 이하의 국제입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예비 을급 국제입찰기구는 1회 위탁금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의 국제입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국제입찰기구는 전 항에서 규정한 기준을 벗어나서 입찰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자격증을 개찬, 양도, 대차, 임대할 수 없다.  **제6조** 처음 국제입찰자격을 신청하는 기업(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예비 을급 국제입찰자격만 신청할 수 있다. 예비 을급 국제입찰자격은 2년에 1회 신청이 가능하다.  **제7조** 신청인이 예비 을급 국제입찰자격을 신청 시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등기한 기업일 것  (2) 행정기관 및 기타 국가기관과 소속관계나 기타 이익관계가 없을 것  (3) 등록자본금이 최소 인민폐 500만 위안일 것  (4) 고정 영업장소와 국제입찰업무 전개에 필요한 시설과 사무여건을 구비할 것  (5) 국제입찰문건 작성과 입찰평가를 조직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출 것  ① 전문 입찰 종업직원이 30명 이상, 그중 입찰 직업자격, 중급 이상 직함 소지인원은 전문 입찰 종업직원 총수의 70% 이상일 것  ② 전기기계제품의 국내 공개입찰이나 정부조달 전기기계제품 공개 입찰업무에 종사한 지 3년 이상(신청연도 미포함)일 것  ③ 최근 3년(신청연도 미포함) 간 전기기계제품의 국내 공개입찰 낙찰금액과 정부조달 전기기계제품 공개입찰 낙찰금액이 누계로 인민폐 10억 위안이상일 것  (6) 최근 3년에 기타 입찰 행정감독부서 또는 정부조달 주관부서의 행정처벌을 받은 적이 없을 것.  **제8조** 신청인이 예비 을급 국제입찰자격을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보고서  (2) 기업법인 영업집조(사본)  (3) 회사 정관 및 내부관리규장(사본)  (4) 전문 입찰 종업인원 명단(별표 1) 및 관련 서류(사본): 노동계약, 입찰 직업자격증서, 직명증서, 사회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5) 전기기계제품의 국내 공개입찰 또는 정부조달 전기기계제품 공개입찰 실적 일람표(별표 2), 그 입찰프로젝트 항목표(별표 3) 및 아래의 서류(사본)  ① 국내 입찰 대리계약 또는 합의서  ② 공개 발표한 입찰공고(정부조달 프로젝트는 정부조달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찰공고 제공)  ③ 개찰기록  ④ 낙찰통지서  ⑤ 정부조달 프로젝트실적을 제공 시에는 정부조달 대리기구자격증을 별도 제출.  **제9조** 신청인은 신고 연도의 7월 5일 전에 지방, 부서 전기기계판공실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 부서 전기기계판공실은 신청 마감일부터 5일 근무일 내에 1차 심사결정을 내리고 아울러 1차 심사의견과 1차 심사합격 신청서류를 상무부에 제출한다.  **제10조** 상무부는 수리한 날로부터 15일 근무일 내에 이 방법 제7조에 열거한 요건에 따라 신청인의 국제입찰자격 부여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인이 이 방법에서 규정한 여건에 부합되는 경우 상무부는 예비 을급 국제입찰자격을 부여하고 공고를 하며, 아울러 《국제입찰기구 자격증》(이하 자격증서라 함)을 발급한다. 자격증은 발급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차기 자격심사결과 공고일까지 유효하다.  **제11조** 신청인이 국제입찰자격을 신청 시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신청은 무효로 된다.  **제3장 자격심사**  **제12조** 상무부 및 지방, 부서 전기기계판공실은 매 2년마다 국제입찰기구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한다. 국제입찰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자격심사 신청일로부터 2년 미만인 국제입찰기구는 당 회의 자격심사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국제입찰기구는 자격심사 당해 연도의 2월말 전에 자격심사신청서류를 지방, 부서 전기기계판공실에 제출하여 1차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방, 부서 전기기계판공실은 자격심사 당해 연도의 3월말 전에 1차 심사의견과 신청서류를 상무부에 제출해야 하며, 상무부는 자격심사 당해 연도의 4월말 전에 자격심사상황을 공고해야 한다.  **제14조** 국제입찰기구가 자격심사를 신청할 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자격심사 신청보고서(업그레이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자격심사 신청보고서에서 자격 업그레이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2) 기업법인 영업집조(사본)  (3) 국제입찰기구 자격증 부본(사본)  (4) 전기기계제품 국제입찰실적 일람표(별표 4)  **제15조** 갑급 국제입찰기구의 2년간 누적 실적이 아래의 요건 중의 하나에 부합되는 경우 자격심사에 통과시킨다.  (1) 국제입찰 낙찰금액이 1.6억 달러에 도달한 경우  (2) 국제입찰프로젝트 완성 수가 150개에 도달한 경우  (3) 국제입찰 낙찰금액이 소재지역(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하동)의 동기 일반무역 전기기계제품 수입총액의 15%에 도달한 경우.  **제16조** 을급 국제입찰기구의 2년간 누적 실적이 아래의 요건 중의 하나에 부합되는 경우 자격심사에 통과시킨다.  (1) 국제입찰 낙찰금액이 1억 달러에 도달한 경우  (2) 국제입찰프로젝트 완성 수가 80개에 도달한 경우  (3) 국제입찰 낙찰금액이 소재지역의 동기 일반무역 전기기계제품 수입총액의 10%에 도달한 경우.  **제17조** 예비 을급 국제입찰기구자격의 2년간 누적 실적이 아래의 요건 중의 하나에 부합되는 경우 자격심사에 통과시킨다.  (1) 국제입찰 낙찰금액이 6,000만 달러에 도달한 경우  (2) 국제입찰 프로젝트 완성 수가 60개에 도달한 경우  (3) 국제입찰 낙찰금액이 소재지역의 동기 일반무역 전기기계제품 수입총액의 2%에 도달한 경우.  **제18조** 아래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예비 을급 국제입찰기구는 자격심사 시에 을급 입찰기구 자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무부는 심사 승인을 거쳐 그 등급을 을급으로 진급시키는 동시에 자격증을 교체 발급한다.  (1) 등록자본금이 800만 위안에 도달한 경우  (2) 2년간 누적 국제입찰 낙찰금액이 1억 달러에 도달하거나 2년간 누계 완성한 국제입찰프로젝트 수가 80개에 도달한 경우.  **제19조** 아래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을급, 예비 을급 국제입찰기구는 자격심사 시에 갑급 입찰기구 자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무부는 심사 승인을 거쳐 그 등급을 갑급으로 진급시키는 동시에 자격증을 교체 발급한다.  (1) 등록자본금이 1,000위안 이상에 도달한 경우  (2) 2년간 누적 국제입찰 낙찰금액이 1.6억 달러에 도달하거나 2년간 누계 완성한 국제입찰프로젝트 수가 150개에 도달한 경우.  **제20조** 국제입찰기구가 자격심사에 참가할 때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국제입찰자격 등급을 강등하며, 상무부는 자격증을 교체 발급한다. 단, 국기이익 수호 등의 특수한 원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자격등급 심사기준을 적당하게 완화할 수 있다.  (1) 갑급 국제입찰기구가 이 방법 제15조에 부합되지 않으나 제16조에 부합되는 경우 국제입찰 자격등급을 을급으로 강등시키며, 갑급 국제입찰기구가 이 방법 제15조, 제16조에 부합되지 않으나 제17조에 부합되는 경우 국제입찰 자격등급을 예비 을급으로 강등시킨다.  (2) 을급 국제입찰기구가 이 방법 제16조에 부합되지 않으나 제17조에 부합되는 경우 국제입찰 자격등급을 예비 을급으로 강등시킨다.  (3) 국제입찰기구의 과실로 인해 기존 입찰평가결과의 변경을 초래한 경우, 갑급 국제입찰기구가 2년간 누계로 8회를 초과한 경우는 을급으로 강등시키고 을급 국제입찰기구가 2년간 누계로 7회 초과한 경우에는 예비 을급으로 강등시킨다.  **제21조** 국제입찰기구 자격심사가 이 방법 제17조에서 규정한 국제입찰 실적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예비 을급 국제입찰기구의 과실로 인해 기존 입찰평가결과의 변경이 2년간 누계로 6회 초과된 경우에는 당회 자격심사에 통과될 수 없다. 다만 국가이익 수호 등의 특수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등급 심사기준을 적절하게 완화할 수 있다.  **제22조** 국제입찰기구가 기한이 지나도 자격심사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그 자격증서는 만기 시부터 스스로 효력을 상실한다.  기한이 지나도 자격심사에 참가하지 않는 국제입찰기구에 대해 상무부는 심사상황을 공고할 때 대외에 공포한다.  **제23조** 국제입찰기구가 자격심사 서류를 제출할 때 거짓자료를 제공한 경우 당회 자격심사에 통과될 수 없다.  **제24조** 국제입찰기구가 전 2개 연도 내에 국제입찰행정가독기구의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자격심사를 받을 때 그 사안의 심각 정도에 따라 강등 또는 심사 미통과 처벌을 가한다.  국제입찰기구가 전 2개 연도 내에 국무원 기타 입찰행정감독부서 또는 정부조달주관부서로부터 입찰대리자격 임시 정지 또는 취소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그 자격심사 시에 강등 또는 자격심사 미통과 처벌을 가한다.  **제25조** 자격심사에 통과되지 못한 국제입찰기구는 당회 자격심사결과 공고를 반포하는 날로부터 국제입찰업무를 전개할 수 없으며, 이미 비안(備案)한 입찰프로젝트는 예외로 한다.  자격심사에 통과되지 못한 국제입찰기구의 자격증은 스스로 효력을 상실하며, 아울러 자격심사결과 공고를 발표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4장 국제입찰기구의 변경**  **제26조** 국제입찰기구가 명칭, 등록주소 등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고 지방, 부서 전기기계판공실의 심사 확인을 받은 후 상무부에 자격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1) 자격증 변경신청서  (2) 자격증 정본, 부본  (3) 공상행정 영업집조(사본) 등 자격증서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증명자료.  **제27조** 국제입찰기구가 합병, 분립 등 중대변화가 발생하여 기존의 기구가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제입찰자격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제28조** 국제입찰기구가 파산 또는 해산 상황이 발생한 경우 회사 등록기관에서 등기 말소를 한 날로부터 자격증이 스스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29조** 국제입찰기구에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경고를 주고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킨다.  (1) 자격증을 개찬, 양도, 대여, 대출  (2) 국제입찰 자격을 신청하거나 자격심사 서류를 제출할 때 거짓 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30조** 국제입찰기구에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키고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 단위 벌금액수의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키며, 불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그 국제입찰자격을 당분간 중지하거나 취소한다.  (1) 입찰인과 결탁하여 허위 입찰을 한 경우  (2) 비밀에 붙여야 하는, 입찰 활동 관련 상황과 자료를 누설한 경우  (3) 입찰인과 결탁하여 입찰문서의 비즈니스, 기술 및 가격 등에 대해 실질적인 수정을 가한 경우.  **제31조** 국제입찰감독기구 업무직원이 직무에 태만하거나 사리사욕을 도모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며, 범죄 구성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적 처벌을 가한다.  **제6장 부 칙**  **제32조** 이 방법은 상무부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3조** 이 방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기기계제품 국제입찰기구 자격심사확정 방법》(상무부 령 [2005] 제6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별표: 1. 전문 입찰 종업인원 명단  2. 전기기계제품 국내 공개입찰 실적 일람표  3. 전기기계제품 국내 공개입찰 프로젝트 항목표  4. 전기기계제품 국제입찰 실적 일람표 |  | **机电产品国际招标机构资格**  **管理办法**  商务部令2012年第3号  　　《机电产品国际招标机构资格管理办法》已于2012年3月9日经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12年第61次部务会议审议通过，现予以公布，自2012年6月1日起施行。原《机电产品国际招标机构资格审定办法》（商务部令[2005]第6号）同时废止。  部长：陈德铭 二〇一二年四月八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规范机电产品国际招标市场秩序，加强机电产品国际招标机构资格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实施条例》等法律、行政法规，以及国务院对有关部门实施招标投标活动行政监督的职责分工，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适用于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机电产品国际招标(以下称国际招标)代理业务的机构的资格管理。  **第三条** 本办法所称机电产品国际招标机构（以下称国际招标机构）是指依法取得机电产品国际招标资格（以下称国际招标资格），从事国际招标代理业务的企业。  **第四条** 商务部负责全国国际招标机构的资格管理工作。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新疆生产建设兵团、沿海开放城市机电产品进出口管理机构和国务院有关部门机电产品进出口管理机构（以下称地方、部门机电办）负责本地区、本部门国际招标机构的资格管理工作。  **第二章　资格申请及审定**  **第五条** 国际招标机构资格等级分为甲级、乙级和预乙级。    甲级国际招标机构从事国际招标业务不受委托金额限制。  　　乙级国际招标机构可以从事一次性委托金额在4000万美元以下的国际招标业务。  　　预乙级国际招标机构可以从事一次性委托金额在2000万美元以下的国际招标业务。  　　国际招标机构不得超越前款规定的标准从事招标代理业务，不得涂改、转让、转借、出租资格证书。  **第六条** 初次申请国际招标资格的企业（以下称申请人）只能申请预乙级国际招标资格。预乙级国际招标资格实行两年一次申请。  **第七条** 申请人申请预乙级国际招标资格应当具备下列条件：  　　（一）依法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登记的企业；  　　（二）与行政机关和其他国家机关没有隶属关系或者其他利益关系；  　　（三）注册资本不少于500万元人民币；  　　（四）具有固定的营业场所和开展国际招标业务所需的设施及办公条件；  　　（五）具备编制国际招标文件和组织招标评标的相应专业力量：  　　1、专职招标从业人员不得少于30名，其中具有招标职业资格、中级以上职称的人员不得少于专职招标从业人员总数的70%；  　　2、从事机电产品国内公开招标或政府采购机电产品公开招标业务三年以上（不含申请年度）；  　　3、近三年（不含申请年度）机电产品国内公开招标中标金额与政府采购机电产品公开招标中标金额合计达到10亿元人民币；  　　（六）近三年没有受到其他招标投标行政监督部门或政府采购主管部门的行政处罚。  **第八条** 申请人申请预乙级国际招标资格应当提交下列材料：  　　（一）申请报告；  　　（二）企业法人营业执照（复印件）；  　　（三）公司章程及内部管理规章（复印件）；  　　（四）专职招标从业人员名单（附表1）及有关材料（复印件）：劳动合同、招标职业资格证书、职称证书、社会保险缴费凭证；  　　（五）机电产品国内公开招标或政府采购机电产品公开招标业绩一览表（附表2）、其招标项目分项表（附表3）及下列材料（复印件）：  　　1、国内招标代理合同或协议；  　　2、公开发布的招标公告（政府采购项目应提供在政府采购网上发布的招标公告）；  　　3、开标记录；  　　4、中标通知书；  　　5、提供政府采购项目业绩的还应提供政府采购代理机构资格证书。  **第九条** 申请人应当于申报年7月5日前向地方、部门机电办报送申请材料。地方、部门机电办应当自申请截止日起5个工作日内作出初步审核决定，并将初步审核意见及初步审核合格的申请材料报送商务部。  **第十条** 商务部自受理之日起15个工作日内依据本办法第七条所列之条件作出是否授予申请人国际招标资格的决定。对符合本办法规定条件的申请人，商务部授予预乙级国际招标资格，并进行公告，同时颁发《国际招标机构资格证书》（以下称资格证书）。资格证书自颁发之日起生效，有效期至下次资格核验结果公告之日止。  **第十一条** 申请人在申请国际招标资格时，提供虚假材料的，当次申请无效。  **第三章　资格核验**  **第十二条** 商务部及地方、部门机电办每两年对国际招标机构进行一次资格核验。自获得国际招标资格之日起至资格核验申请之日止不满两年的国际招标机构，可以不参加当次资格核验。  **第十三条** 国际招标机构应当于资格核验当年2月底前将资格核验申请材料报送地方、部门机电办进行初步审核。地方、部门机电办应当于资格核验当年3月底前将初步审核意见和申请材料报送商务部。商务部应当于资格核验当年4月底前对资格核验情况进行公告。  **第十四条** 国际招标机构申请资格核验时，应提交以下材料：  　　（一）资格核验申请报告（满足升级条件的，可在资格核验申请报告中提出资格升级的申请）；  　　（二）企业法人营业执照（复印件）；  　　（三）国际招标机构资格证书副本（复印件）；  　　（四）机电产品国际招标业绩一览表（附表4）。  **第十五条** 甲级国际招标机构两年累计业绩符合下列条件之一的，资格核验予以通过：  　　（一）国际招标中标金额达到1.6亿美元的；  　　（二）完成国际招标项目包达到150个的；  　　（三）国际招标中标金额达到所属地区（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下同）同期一般贸易项下机电产品进口总额15%的。  **第十六条** 乙级国际招标机构两年累计业绩符合下列条件之一的，资格核验予以通过：  　　（一）国际招标中标金额达到1亿美元的；  　　（二）完成国际招标项目包达到80个的；  　　（三）国际招标中标金额达到所属地区同期一般贸易项下机电产品进口总额10%的。  **第十七条** 预乙级国际招标机构资格两年累计业绩符合下列条件之一的，资格核验予以通过：  　　（一）国际招标中标金额达到6000万美元的；  　　（二）完成国际招标项目包达到60个的；  　　（三）国际招标中标金额达到所属地区同期一般贸易项下机电产品进口总额2%的。  **第十八条** 满足下列条件的预乙级国际招标机构可以在资格核验时提出乙级招标机构资格的申请，经商务部审核批准，其等级晋升为乙级，并由商务部换发资格证书。  　　（一）注册资本达到800万元人民币的；  　　（二）两年累计国际招标中标金额达到1亿美元或两年累计完成国际招标项目包达到80个的。  **第十九条** 满足下列条件的乙级、预乙级国际招标机构可以在资格核验时提出甲级招标机构资格的申请，经商务部审核批准，其等级晋升为甲级，并由商务部换发资格证书。  　　（一）注册资本在1000万元人民币以上的；  　　（二）两年累计国际招标中标金额达到1.6亿美元或两年累计完成国际招标项目包达到150个的。  **第二十条** 国际招标机构参加资格核验时，有下列情形之一的，国际招标资格等级予以降级，由商务部换发资格证书。但因维护国家利益等特殊原因的，可以适当放宽资格等级核验标准：  　　（一）甲级国际招标机构不符合本办法第十五条但符合第十六条的，国际招标资格等级降为乙级；甲级国际招标机构不符合本办法第十五条、第十六条但符合第十七条的，国际招标资格等级降为预乙级；  　　（二）乙级国际招标机构不符合本办法第十六条但符合第十七条的，国际招标资格等级降为预乙级；  　　（三）因国际招标机构过错导致变更原评标结果的，甲级国际招标机构两年累计超过8次的降为乙级；乙级国际招标机构两年累计超过7次的降为预乙级。  **第二十一条** 国际招标机构资格核验未达到本办法第十七条规定的国际招标业绩，或者因预乙级国际招标机构过错导致变更原评标结果两年累计超过6次的，当次资格核验不予通过。但因维护国家利益等特殊原因的，可以适当放宽资格等级核验标准。  **第二十二条** 国际招标机构逾期不参加资格核验的，其资格证书到期自动失效。  　　对逾期不参加资格核验的国际招标机构，商务部将在核验情况公告中公布。  **第二十三条** 国际招标机构在报送资格核验材料时提交虚假材料的，当次资格核验不予通过。  **第二十四条** 国际招标机构上两年度内受到国际招标行政监督机构行政处罚的，在资格核验时，视其情节严重程度，不予升级、予以降级或不予通过资格核验。  　　国际招标机构上两年度内受到国务院其他招标投标行政监督部门或政府采购主管部门暂停或取消招标代理资格行政处罚的，在资格核验时予以降级或不予通过资格核验。  **第二十五条** 未通过资格核验的国际招标机构，自当次资格核验结果公告发布之日起不得继续开展国际招标业务，已经备案的招标项目除外。  　　未通过资格核验的国际招标机构，资格证书自动失效，并于资格核验结果公告发布之日起一个月内交回资格证书。  **第四章　国际招标机构变更**  **第二十六条** 国际招标机构名称、注册地址等事项发生变更的，应当自情形发生之日起30日内持以下材料，经地方、部门机电办核实后，向商务部申请更换资格证书：  　　（一）资格证书变更申请；  　　（二）资格证书正本、副本；  　　（三）工商营业执照（复印件）等与资格证书变更事项有关的证明材料。  **第二十七条** 国际招标机构发生合并、分立等重大变化导致原机构发生实质性变化的，应当重新申请国际招标资格。  **第二十八条** 国际招标机构发生破产或解散的，自公司登记机关办理注销登记后资格证书自动失效。  **第五章　法律责任**  **第二十九条** 国际招标机构有下列行为之一的，给予警告，并处三万元以下罚款：  　　（一）涂改、转让、转借、出租资格证书的；  　　（二）在申请国际招标资格或报送资格核验材料时提供虚假材料的。  **第三十条** 国际招标机构有下列行为之一的，处五万元以上二十五万元以下罚款，对单位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单位罚款数额5%以上10%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并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暂停或取消其国际招标资格：  　　（一）与招标人相互串通虚假招标的；  　　（二）泄露应当保密的与招标、投标活动有关的情况和资料的；  　　（三）与投标人串通就投标文件的商务、技术和价格等进行实质性修改的。  **第三十一条** 国际招标监督机构工作人员玩忽职守、徇私舞弊或者滥用职权，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第六章　附 则**  **第三十二条** 本办法由商务部负责解释。  **第三十三条** 本办法自2012年6月1日起施行。《机电产品国际招标机构资格审定办法》（商务部令[2005]第6号）同时废止。  　　附表：1.专职招标从业人员名单  　　2.机电产品国内公开招标业绩一览表  　　3.机电产品国内公开招标项目分项表  　　4.机电产品国际招标业绩一览表 |